

#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서울-평양 공동개최 유치 동의안

의안 번호	27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8년 12월 12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## 1. 제안이유

- 가.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('18.9.19.)에서 '9월 평양공동선언'을 통해 남북한 정상은 2032 하계올림픽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데 협력하기로 하였음
- 나. 이후, 남북체육분과회담('18.11.2)에서 남과 북은 2032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의향을 담은 서신을 국제올림픽위원회에 공동으로 전달하고 필요한 문제들을 계속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함
- 다. 이에 따라, 대한체육회에서는 2032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유치를 위한 국내 유치신청도시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바, 「국제경기대회 지원법」 제6조에 따라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서울-평양 공동개최 유치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대회개요(안)

- 대회명 : 2032년 제35회 서울-평양 하계올림픽대회
- 대회기간 : 2032년 7월~8월 중 / 약 15일간
- 장소 : 서울특별시-평양직할시 및 한반도 전역
- 참가종목 : 33종목 (\* 2020 도쿄 하계올림픽대회 기준)
- 참여국가 : IOC회원국 약 200여개 국가
- 참여인원 : 약 28,000명 (선수입원단 24,000 여명, 기자단 4,000 여명)
- 개최주기 : 4년 \* 2024년 파리(프랑스) / 2028년 LA(미국) 개최

### 3. 유치전략

#### 가. 남북 수도인 서울-평양 공동 개최로 평화와 화합의 통일올림픽 실현

- 체제와 이념의 차이를 넘어 남·북한 수도가 같이하는 ‘한반도 통일올림픽’ 실현
-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초고속 통신망을 활용한 서울 - 평양 동시 개·폐회식 개최

#### 나. 경기장 개·보수 등 기존 시설 활용으로 경제올림픽 실현 가능

- 제100회 전국체전을 위한 경기장 시설 개보수 등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타시도와 경기장 분산 운영을 통해 경제 올림픽 실현
- 서울은 대한민국의 도시 중에서 평양과 최단거리에 있는 도시로서, SOC 인프라 구축 비용이나 통신·물류 비용 절감 가능

#### 다. 교통, 통신, 숙박, 관광 등 올림픽 개최지로 최적화

-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MICE 단지 조성을 위한 국제교류복합 지구 추진
- 사회, 경제, 문화적 요소가 서울에 집중되고 교통, 통신, 숙박, 관광 등 중심지

### 4. 기대효과

#### 가. 경제적 효과

- 국제경기대회는 투자 및 소비 지출의 증가에 의한 국내 경기 활성화 등 직접적인 경제 효과 외에도, 국가 홍보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의 유·무형의 간접적인 경제효과를 가져옴

#### 나. 한반도 평화 및 국민 화합 도모

- 올림픽 개최 과정에서 남북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고, 전 세계에 평화 분위기 조성
- 정치, 사회,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파급효과 유발

## 5. 소요예산(추정치)

○ 서울시 총 소요예산액 : 1조 1,571억원 추정

- 소요내역 : 개·폐회식, 경기장 개·보수, 선수촌, 경기 운영 등

계(100%)	서울시(30%)	중앙정부(30%)	조직위원회(40%)
3조 8,570억원	1조 1,571억원	1조 1,571억원	1조 5,428억원

※ 조직위원회 : 광고료, 협찬 등으로 충당

※ 사회간접자본(SOC) 비용 제외

## 6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○ 「국제경기대회 지원법」 [법률 제15812호]

#### 제6조(대회 유치 승인)

①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(경기단체를 포함한다)의 장(이하 "지방자치단체장등"이라 한다)은 관련 국제스포츠기구의 장에게 대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하고 대회 유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대회 유치 여부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○ 「종목별 국제체육행사 국내유치에 관한 규정」 [대한체육회 규정, 제정 2016.3.21]

#### 제5조(국제체육대회 개최계획서의 제출)

① 국제체육대회를 국내에 유치코자 하는 체육회 회원종목단체는 해당 국제경기연맹(국제체육기구 등)의 유치신청서 제출 6개월 전에 국제체육대회 개최계획서(별지 제1호서식)를 체육회에 제출하되, 반드시 유치관련 회의록(해당 회원종목단체 이사회 및 지방자치단체 의회 또는 이와 상응하는 회의)과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이행각서(별지 제2호 서식) 또는 유치희망도시 이행각서(별지 제3호 서식)를 첨부하여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19년 예산 편성 반영 요구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※ 작성자 : 체육정책과 체육정책팀 조희정 (☎ 2133-2679)